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한 이유와 일자리보장에 관한 입장*

* 이 글은 2020년 11월 14일에 개최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10차 쟁점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기본소득인가 일자리보장인가”를 수정하고 축약한 것임을 밝힌다.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중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

‘때를 만난 아이디어’라고 자처하는 두 가지 주요한 정책구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이다. 여기서 일자리보장(Job Guarantee; JG)이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을 말한다(Harvey, 2005; Tcherneva, 2003; Wray, 2017 등 다수).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보장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8, p. 111).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은 각각 자신이 우리 시대의 당면 문제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비자발적 실업, 불안정·비정규 노동 등에 적실히 대처하기 위한 더 나은 구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합해왔다.¹⁾

본고는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중 무엇이 위에서 열거한 우리 시대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한지를 따진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

1)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일자리보장 지지자들의 첫 번째 주요 논쟁은 ‘Rutgers Journal of Law & Urban Policy 2(1)(Fall 2005)’의 특집논문들에서, 두 번째 주요 논쟁은 ‘Basic Income Studies 7(2)(December 2012)’의 특집논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 같다. 먼저 일자리보장의 개념, 수단, 목표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한 이유를 종합 정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기본소득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보장 아이디어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필자의 (잠정적인) 입장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일자리보장의 개념, 수단, 목표

위에서 정의했듯이, 일자리보장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을 뜻한다(레이, 2017; Harvey, 2005; Tcherneva, 2003 등 다수). 일자리보장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에 빗대는 용어로서 ‘최종고용자(Employer of Last Resort: ELS)’,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완충재고’ 기능을 한다는 점에 착안한 용어로서 ‘완충재고고용(Buffer Stock Employment; BSE)’, 이 프로그램이 주로 공공서비스 영역에 집중된다는 점에 주목한 용어로서 ‘공공서비스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 PSE)’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Tcherneva, 2003, 2018; Wray, Dantas, Fullwiler, Tcherneva, and Kelton, 2018; Wray, Kelton, Tcherneva, Fullwiler, and Dantas, 2018 등 다수).

일자리보장의 수단과 목표를 요약하자면, ‘최저임금(또는 생활임금) 수준에서 무한탄력적인 노동 수요(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공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과 일자리보장을 개념적으로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보장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일자리보장은 민간 부문에서 노동인구를 모두 고용하지 못하여 생긴 일자리 갭(job gap)을 완전히 메울 만큼, 즉 노동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흡수할 만큼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충분히, 그것도 경기불황기뿐만 아니라 경기호황기까지 포함하여 항상적으로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완전고용 또는 강한 완전고용을 달성하겠다는 대단히 야심찬 형태의 정책 구상이다. 따라서 일자리보장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나 공공사회서비스와 공공인프라의 확충,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일 반에 대한 반대와 비판으로 결코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한 이유, 향후 전망 등을 종합 정리한다.

첫째,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fixed price/floating quantity rule’(임금 수준은

고정시키고, 노동공급량은 일자리 갭에 따라 변동시킨다는 규칙)에 따라 경우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경기변동 상으로 경기침체 국면인지 공황 국면인지 호황 국면인지 등에 상관없이, 또한 자동화 추세의 진행과도 관계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손쉽게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 부문 및 기존 공공 부문과의 경쟁·대체 관계,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유사 직종의 민간 부문과 기존 공공 부문으로부터의 노동인구의 이동 가능성, 행정 부담 및 비용과 모니터링 문제, 자동화 추세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일자리보장론자들의 약속은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완충재고 노동자들은 ‘산업예비군(실업자)’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Sawyer, 2003).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동안은 일자리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일자리 자체에 본질적 가치, 다양한 비화폐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자리보장론자들이 아메리코AmeriCorps와 같은 현존하는 시민서비스 프로그램 civic service program (Wray, 1999; 2000), 현존하는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Wray, Dantas, Fullwiler, Tcherneva, and Kelton, 2018; Wray, Kelton, Tcherneva, Fullwiler, and Dantas, 2018)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참여소득과 결합하는 방식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점(Tcherneva and Wray, 2005; Tcherneva, 2007)을 고려해볼 때, 실제 시행 및 그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보장론을 현실화하라는 요구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일자리보장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셋째,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일자리보장(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노동연계복지(workfare)’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정한 노동(fair work)’(경기침체, 공황, 자동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된 ‘자격(가치) 있는’ 빈민(‘deserving’ poor)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을 포함함) 프로그램이며, 강제노동과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안하는 일자리를 받아들일 때에만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으로부터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현재의 조건적인 사회보장제도 하에서는 소득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공정한 노동’을 가장한 ‘노동연계복지’, 노동의 권리 보장을 가장한 강제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유의미한 액수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만 사람들은 정부에서 제안하는 일자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강제적 성격 없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전일제) 유급노동의 전면화’라고 하는 헛된 약속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고 노동 및 사회 보호 수준을 높이며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기본소득이 요청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이룬다.

넷째, 일자리보장 구상은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노동능력이 없는 자’, ‘자격(가치)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과 ‘자격(가치) 있는 빈민(deserving poor)’이라는 허위의 구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승인하고 강화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반면 기본소득은 이러한 허위의 구분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각종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개인(특히나 사회취약계층)의 자유, 기회, 선택, 역량 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다섯째, 근본적으로 일자리보장 구상의 근저에는 ‘(전일제) 완전고용’에 대한 집착(노동주의에 대한 집착이자, 부분적으로는 경제성장주의, 생산주의에 대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현실부합성과 실천적합성을 담보한 진정으로 해방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대 추구 행위의 강화와 불평등 심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일자리보장론자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소위 ‘공정한 노동(fair work)’이 아니라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공정한 몫(fair share)’이고, ‘노동연계복지(workfare)’가 아니라 ‘공유복지(commonfare)’다.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최)상위 소득자 및 자산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득과 부를 벌어들이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는 대신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보장 정책이라고 하는 강제적 성격이 강하고 가부장주의적인 개입을 강요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자리보장은 오늘날의 소득 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정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의 자유를 제약하고 침해한다는 점에서 해방적인 정책도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창출된 부로부터의 수익을 일정 정도 공유하는 시스템인 기본소득은 오늘날의 소득 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사회취약계층의 기회와 자유를 확장시키는 해방적인 정책이다.

일곱째, 생태, 젠더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하다.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이 생태·환경 보전 사업, 그린 뉴딜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자리보장이 기본소득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다(Tcherneva, 2007). 하지만 일자리보장은 생태·환경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일자리 창출은 거의 필연적으로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린 뉴딜과 생태·환경 보전 사업은 분명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그것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되는 한 생태적 전환에 기여하는 힘은 제약될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조차 존재한다.

반면 기본소득은 “빈곤 문제를 경제성장과 개발로 대처하고자 하는 성장주의와 개발주의의 압력을 유의미하게 낮춤으로써 생태적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생태세와 생태배당을 결합한 구체적인 정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을 이전보다 개선시키면서도 이들의 에너지 사용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한다”(이건민, 2018. 9. 20). 당연한 말이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이 에너지 전환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책을 가로막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기본소득(기본소득 정책패키지)이냐에 따라 그 정도는 상당히 상이할 수 있겠지만, 경제성장주의, 생산주

의, 노동주의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생태적 전환에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급박한 생태재앙에 제대로 대처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 응당 우리는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적 전환을 명시적으로 지향하면서 이를 촉발하는 형태로 기본소득을 도입·배치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복지보다 우선시하고 우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노동능력이 없는 자’, ‘자격(가치) 없는 빈민’과 ‘자격(가치) 있는 빈민’이라는 허위의 구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승인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일자리보장론은 젠더평등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젠더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동시간 감축, 아동, 노인 돌봄 영역 등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확대, 젠더평등 지향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마련 및 조직문화 개선 등과 동반될 경우, 기본소득은 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등에서의 젠더평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생애주기상의 특정 시점에서 각 개인의 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노동시간 배분이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측면을 줄이고, 각자의 형편과 선호에 따라 노동시간 배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시킨다”(이건민, 2018. 9. 20).

종합하자면, “빈곤과 불평등을 가장 효율적·효과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생태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리얼 유토피아’로의 ‘거대한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진정으로 다른 사회를 가져올 수 있는 큰 정책”은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바로 “기본소득”이다(이건민, 2017, p. 112). 기본소득은 “자본과 노동 중에서 자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자본주의적 기업과 노동자 소유 기업 중에서 자본주의적 기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노동과 활동 중에서 노동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생산과 재생산 중에서 생산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성장과 복지 중에서 성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개발/발전과 생태/환경 중에서 개발/발전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기존의 사회적 기울기(social gradient)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이건민, 2019, pp. 3-4).

보론: 일자리보장 아이디어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수용할 것인가

위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며 일자리보장보다 기본소득이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일자리보장은 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아이디어인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일자리보장에 관한 필자의 (잠정적인) 입장 몇 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①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일자리보장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그렇긴 하지만,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일자리보장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노우에 도모히로(2020, p. 148)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Job Guarantee

Program; JGP보다 기본소득이 훨씬 낫긴 하지만 “탈노동 사회가 정착할 때까지는 기본소득에 더해 JGP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희망자를 모두 받아서 매일 2시간 정도 도로와 공원을 청소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일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시급 1,000엔으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일하면 2,000엔이 됩니다. 그 후 도시락을 나눠 주고 공공시설 등에서 환담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니트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강남훈은 역자 후기(도모히로, 2020, pp. 192-193)에서 “기후 위기, 인공지능, 수명 연장에 대응하려면 농업을 소농 중심(소농형 스마트 농장을 포함해서)으로 개혁해서 더 많은 사람이 농촌에 살게 만들어야” 하므로, 농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아이디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 종사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농업참여수당(농업 종사자들에게 개인별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농민기본소득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을 지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농민들은 전국민 기본소득 이외에 농민기본소득을 추가로 받게 된다”(도모히로, 2020, p. 193).

② 일자리보장론자들도 강조하고 있는 아바 러너Abba Lerner의 기능적 재정functional finance 접근법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균형재정론에 집착하느라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유급노동 중심성, (전일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완전고용에 대한 집착은 경계한다.

③ 시장 영역과 기존의 공공 영역에서 대처하지 못한 ‘미충족 사회욕구unmet social needs’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중요하다. ‘미충족 사회욕구’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돌봄, 생태·환경 보전 활동, 자원봉사활동,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미충족 사회욕구’의 상당 부분이 재량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미충족 사회욕구’는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양의 외부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발성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이것만으로 미충족 사회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이건민, 2020). 분산화된 기제라는 점도 기본소득의 약점일 수 있다(Pérez-Muñoz, 2016; 2018). 따라서 참여소득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 참여예산제도, 시민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기존 제도,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활용하여 ‘미충족 사회욕구’에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이때 참여소득은 Atkinson(1996) 식의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라 Pérez-Muñoz(2016; 2018) 식의 제약적인 형태에 가까울 것이다). (또는 부문에 따라서는 공공 부문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창출되는 공공일자리는 임금, 노동조건 등의 면에서 바람직한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충족 사회욕구’에 대응하여 ‘공동체와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지, 본말이 전도되어 ‘(유급)일자리의 창출’이나 이를 통한 ‘(강한)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정책목표가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

④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전환을 추동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다

다. 탄소세-탄소배당 정책을 비롯한 기본소득의 도입과 그린 뉴딜의 추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소세-탄소배당 정책을 비롯한 기본소득의 도입 없는 그린 뉴딜 정책의 추진은 기대한 효과를 낳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린 뉴딜의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지, 본말이 전도되어 ‘(유급)일자리의 창출’이나 이를 통한 ‘(강한) 완전고용의 달성’, ‘경제성장’이라는 정책목표가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 이건민. (2017). “고용크레딧 거래제도’의 문제점: 강두용의 구상에 대한 비판”. <녹색평론>, 156, 102-112.
- 이건민. (2018. 9. 20). “[대전환의 밑그림 - 녹색전환연구소 5주년 기념 기획연재] ③ 삶 전환의 열쇳말, 기본소득”. <프레시안>. [2021년 2월 23일 최종접속]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11429>
- 이건민. (2019).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코드와 흐름의 잉여가치’에 대한 토론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0월 26일]
<https://alternative.house/191026-news-2019criso-yi>
<https://alternative.house/wp-content/uploads/2019/10/191026-session6-discussion-Gunmin-Yi.pdf>
- 이건민.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 방향 모색: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에 비추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최 제33차 고령사회 전문가 포럼. [12월 23일]
<https://alternative.house/news-20201223-forum-yi>
<https://alternative.house/wp-content/uploads/2020/12/20201223-33rd-senior-society-expert-forum-yi.pdf>
- Atkinson, A. B. (1996). “A Defence of Participation Income”. *Political Quarterly*, 67(1), 67-70.
- Harvey, P. (2005). Right to Work and Basic Income Guarantees: Competing or Complementary Goals. *Rutgers Journal of Law & Urban Policy*, 2(1), 8-63.
- Pérez-Muñoz, C. (2016). “A Defense of Participation Income”. *Journal of Public Policy*, 36(2), 169-193.
- Pérez-Muñoz, C. (2018). “Participation Income and the Provision of Socially Valuable Activities”. *Political Quarterly*, 89(2), 268-272.
- Sawyer, M. (2003). Employer of Last Resort: Could It Deliver Full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Journal of Economic Issues*, 37(4), 881-907.
- Tcherneva, P. R., & Wray, L. R. (2005). Common Goals-Different Solutions: Can Basic Income and Job Guarantees Deliver Their Own Promises. *Rutgers Journal of Law & Urban Policy*, 2(1), 125-166.
- Tcherneva, P. R. (2003). Job or Income Guarantee?. C-FEPS Working Paper, No. 29. Center for Full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August 2003]
- Tcherneva, P. R. (2007). What Are the Relative Macroeconomic Merits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irect Job Creation and Basic Income Guarantees?. *Levy Working Paper*, No. 517.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October 2007]
- Tcherneva, P. R. (2018). The Job Guarantee: Design, Jobs, and Implementation. *Levy Working Paper* No. 902.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April 2018]

Tomohiro, I. (2020). 『기본소득의 경제학: 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 논쟁)』 (송주명, 강남훈, 안현효 역). 과천: 진인진. (원서출판 2019)

Van Parijs, P, & Vanderborght, Y. (2018).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홍기빈 역). 서울: 흐름출판. (원서출판 2017)

Wray, L. R., Dantas, F., Fullwiler, S., Tcherneva, P. R., & Kelton, S. A. (2018). Public Service Employment: A Path to Full Employment. Research Project Report. New York: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April 2018]

Wray, L. R., Kelton, S. A., Tcherneva, P. R., Fullwiler, S., & Dantas, F. (2018). Guaranteed Jobs through a Public Service Employment Program. Policy Note, No. 18-2.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Wray, L. R. (1999). Public Service Employment-Assured Jobs Program: Further Considerations. Journal of Economic Issues, 33(2), 483-490.

Wray, L. R. (2000). The Employer of Last Resort Approach to Full Employment. C-FEPS Working Paper, No. 9. Center for Full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July 2000]

Wray, L. R. (2017).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홍기빈 역). 서울: 책담. (원서출판 2015)